

[별표 1] 월이용료 부담액 (2020.01.01.기준)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등급	35,030	46,960	58,410	64,350	69,000
2등급	32,430	43,500	54,110	59,610	63,930
3등급	29,940	40,150	49,960	55,070	59,050
4등급	28,570	38,790	48,590	53,680	57,690
5등급	27,210	37,410	47,210	52,320	56,310
인지지원등급	27,210	37,410	47,210	47,210	47,210

(단위 : 원)

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1식)	2,000원

라.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별표 1] 월이용료 부담액 (2021.01.01.기준)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원	1,351,700 원	1,295,400 원	1,189,800 원	1,021,300 원	573,900 원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등급	35,480 원	47,570 원	59,160 원	65,180 원	69,890 원
2등급	32,850 원	44,060 원	54,810 원	60,380 원	64,750 원
3등급	30,330 원	40,670 원	50,600 원	55,780 원	59,810 원
4등급	28,940 원	39,290 원	49,220 원	54,370 원	58,430 원
5등급	27,560 원	37,890 원	47,820 원	52,990 원	57,040 원
인지지원등급	27,560 원	37,890 원	47,820 원	47,820 원	47,820 원

(단위 : 원)

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1식)	2,000원

라.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별표 1] 월이용료 부담액 (2022.01.01.기준)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원	1,486,800 원	1,350,800 원	1,244,900 원	1,068,500 원	597,600 원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36,950 원	49,530 원	61,600 원	67,870 원	72,780 원
2등급	34,210 원	45,880 원	57,070 원	62,870 원	67,420 원
3등급	31,580 원	42,350 원	52,690 원	58,080 원	62,280 원
4등급	30,140 원	40,910 원	51,250 원	56,620 원	60,840 원
5등급	28,700 원	39,450 원	49,790 원	55,180 원	59,400 원
인지지원등급	28,700 원	39,450 원	49,790 원	49,790 원	49,790 원

(단위 : 원)

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1식)	2,000원

라.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별표 1] 월이용료 부담액 (2023.01.01.기준)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38,630	51,780	64,400	70,950	76,080
2등급	35,760	47,960	59,660	65,720	70,480
3등급	33,010	44,270	55,080	60,720	65,110
4등급	31,510	42,770	53,580	59,190	63,600
5등급	30,000	41,240	52,050	57,690	62,100
인지지원등급	30,000	41,240	52,050	52,050	52,050

(단위 : 원)

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1식)	2,300원

라.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